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081
----------	-------

발의연월일 : 2026. 9. 3.

발 의 자 : 김용태 · 서천호 · 김성원
조정훈 · 조은희 · 이종배
박충권 · 김승수 · 고동진
강선영 · 김재섭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해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치매환자의 실종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안전보조기기 등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을 위한 다양한 기기 보급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배회감지기 등은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대여나 민간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조례에 따라 지원 품목과 기간이 상이하기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치매환자의 안전확인을 위한 보조기기를 현장에 보급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관리 체계가 부재하여, 치매환자의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치매환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조기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치매센터·광역치매센터·치매안심센터로 이어지는 전달 체계에 각 기관의 권한과 특성에 맞는 안전보조기기 지원 체계 구축, 현황 조사,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치매안심센터의 과도한 업무 부담은 완화하면서도 치매환자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신설 등).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를 제12조의5로 하고, 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4(치매환자 안전보조기기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기기(이하 “안전보조기기”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조기기 지원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안전보조기기 지원 체계 구축

제16조의2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안전보조기기 지원 현황 조사

제17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안전보조기기 이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2조의4(치매환자 안전보조기 기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 방하고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 여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기기(이하 “안전보조기기” 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조기기 지원의 대상 · 기준 및 방법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u>
<u>제12조의4(경도인지장애진단자 지원사업) (생 략)</u>	<u>제12조의5(경도인지장애진단자 지원사업) (현행 제12조의4와 같음)</u>
제16조(중앙치매센터의 설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 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치매 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1. ~ 6. (생 략)	제16조(중앙치매센터의 설치) ① ----- ----- ----- -----.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u>6의2. 안전보조기기 지원 체계 구축</u>

7. ~ 14. (생 략) ② . ③ (생 략) 제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① 시·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치매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 9. (생 략) <u><신 설></u> <u>10.</u> (생 략) ② . ③ (생 략)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생 략)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6의4. (생 략) <u><신 설></u> <u>7.</u> (생 략) ③ . ④ (생 략)	7. ~ 1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① ----- ----- ----- -----. 1. ~ 9. (현행과 같음) <u>10. 안전보조기기 지원 현황 조사</u> <u>11.</u> (현행 제10호와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6의4. (현행과 같음) <u>7. 안전보조기기 이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u> <u>8.</u> (현행 제7호와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	--